

## 현장실습 협약서

<호사동>

## 현장실습 협약서

<하교동>

제1조(목적) 본 현장실습 협약서는 ( 참여기업명 일련 ) (이하 “실습기관”이라 한다)과 상명대학교 학과(전공) (이하 “상명대학교”이라 한다) 상호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습기간 및 장소) 현장실습 실습(이하 “현장실습”이라 한다)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(주)로 하며, 실습 장소는 사전에 상호 협의 한다.

호사동

제3조(실습기관의 의무) “실습기관”은 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,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.

제4조(실습생의 의무)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.

1. 실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.
2. 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
3.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.
4. 실습 도중 알게 된 “갑”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하교동

제4조(실습생의 의무)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.

1. 실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.
2. 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
3.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.
4. 실습 도중 알게 된 “갑”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실습기간) 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1. 실습 기준시간은 1일 8시간(주 40시간)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며, 연속 4주에 최소 16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2. 실습 수행 상 연장실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하지 않는다.

제6조(설습지원 및 안전관리)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습기관 및 상명대학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.

1.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없는 지원금을 설습지원비로 지급한다.

제6조(설습지원 및 안전관리)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습기관 및 상명대학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.

1.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격이 없는 지원금을 설습지원비로 지급한다.

2.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

실습지원비를 감액하여 징급할 수 있다.

3. 실습기간은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징급하여야 한다.

4.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산업체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. 다만,

현장실습의 목적 상 필요할 경우 안전·보건·교육 실시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 장애 방지 조치 등 안전·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.

5. 상령대학교는 실습기관의 산업체험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.

6. 상령대학교는 실습생에게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시작 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, 정보보안교육,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감액하여 징급할 수 있다.

3. 실습기간은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징급하여야 한다.

4.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산업체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. 다만,

현장실습의 목적 상 필요할 경우 안전·보건·교육 실시,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, 해당 기계·기구·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·가스·분진 등에 의한 건강 장애 방지 조치 등 안전·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.

5. 상령대학교는 실습기관의 산업체험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습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.

6. 상령대학교는 실습생에게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시작 전에 산업안전보건교육, 정보보안교육,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습 협약의 평가) 실습기관은 상령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 평가서를 실습 종료 후 상령대학교에게 통보한다.

제9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, 상령대학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학과  
도장

제7조(실습 협약의 평가) 실습기관은 상령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실습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 평가서를 실습 종료 후 상령대학교에게 통보한다.

제9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, 상령대학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사업자등록번호 :	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령대 31
주 소 :	상령대학교 천안캠퍼스
실습 기관명 :	학과(전공)
대 표 :	학과(전공)

학과  
도장

사업자등록번호 :	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령대 31
주 소 :	상령대학교 천안캠퍼스
실습 기관명 :	학과(전공)
대 표 :	학과(전공)

## 〈앞면을 반전함〉

호사

학과

호사

학과

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~~화재~~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해지일 ~~2025년~~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~~화재~~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해지일 ~~2025년~~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, 상명대학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사업자등록번호 : 주 소 : 설습 기관명 : 대 표 :	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 3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학과(전공) <i>화재(화재)</i>
---	---

사업자등록번호 : 주 소 : 설습 기관명 : 대 표 :	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 3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학과(전공) <i>화재(화재)</i>
---	---